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37호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레

○ 조	레 제 1 8 2 5 호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체 육 진 흥 과 3
○ 조	레 제 1 8 2 6 호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7
○ 조	레 제 1 8 2 7 호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미 디 어 정 보 과 11
○ 조	레 제 1 8 2 8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 화 관 광 과 19
○ 조	레 제 1 8 2 9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생 활 경 제 과 25
○ 조	레 제 1 8 3 0 호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28
○ 조	레 제 1 8 3 1 호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32
○ 조	레 제 1 8 3 2 호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37
○ 조	레 제 1 8 3 3 호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환 경 보 전 과 41
○ 조	레 제 1 8 3 4 호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공 원 녹 지 과 46
○ 조	레 제 1 8 3 5 호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교 통 행 정 과 51
○ 조	레 제 1 8 3 6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 시 경 관 과 55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 공 고 제 1 8 4 6 호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세 무 과 62
- 공 고 제 1 8 5 8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63
- 공 고 제 1 8 5 9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66
- 공 고 제 1 8 7 4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생 활 경 제 과 68
- 공 고 제 1 8 8 2 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주민 의견청취 공고 도 시 경 관 과 79
- 공 고 제 1 8 8 3 호 「남동구 맑은터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환 경 보 전 과 86
- 공 고 제 1 8 8 4 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2차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99
- 공 고 제 1 8 8 5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107
- 공 고 제 1 8 8 8 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공 동 주 택 과 109
- 공 고 제 1 8 9 0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자 동 차 관 리 과 118
- 보 건 소 공 고 제 9 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122

고 시

- 고 시 제 1 6 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래구역 소로2-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23
- 고 시 제 1 6 1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25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25호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

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남동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

다.

제8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대장작성·관리)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 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안” 반영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 안 제3조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안 제4조, 제5조
- 관리주체 : 안 제6조
-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사무의 위탁 : 안 제8조, 제9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 안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26호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소래포구축제”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돌고래”를 “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래포구축제”를 “남동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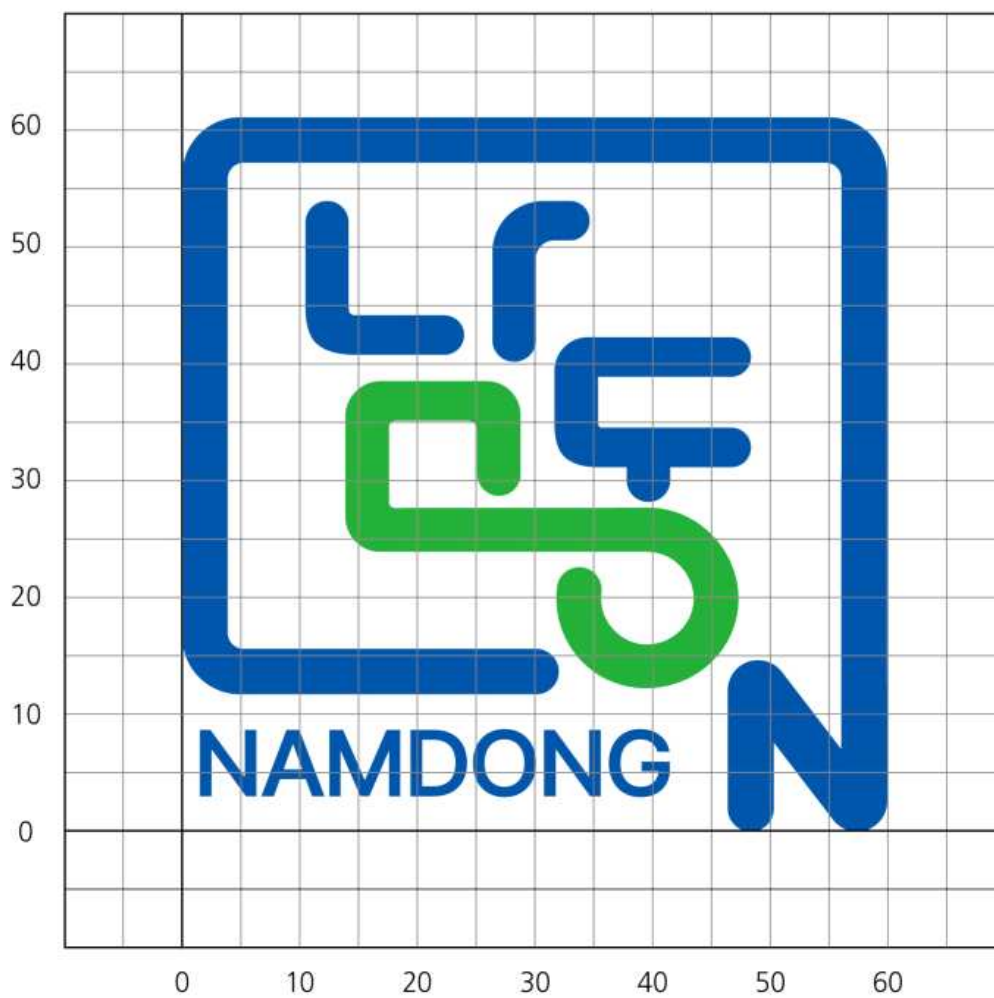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시브랜드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3] 남동구 캐릭터 (새랑이 게랑이) (제3조제3호 관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개청 후 30여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온 남동구의 발전상을 담고 도시의 다양함을 표현하며 주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BI(도시브랜드) 변경 : 남동구의 발전상과 다양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BI로 변경 (별표 2 개정)
- 남동구 캐릭터 변경(개발) : 주민에게 친근하고 활용성이 높은 캐릭터로 변경
(안 제3조제3호, 안 제9조제2항, 별표 3 개정)
- 남동구 구 동물 변경 : 자연친화적인 녹색·환경도시의 상징인 동물로 변경 돌고래→양 (안 제3조제9호 개정)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27호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윤

리의 확립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 해소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담당업무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를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스마트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 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모든 구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조례의 상위 법률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20.12.10. 시행)되어 관련 용어 및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 보완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 최신 정보기술·서비스를 정보화 정책에 적용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률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안 제명)
- 상위 법률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 제2조, 제4조, 제6조 ~ 제8조, 제11조, 제15조 ~ 제16조)
- 상위 법률 개정사항 반영, 행정정보의 제공 등 실효성이 없어진 조문 삭제 및 조문의 위치를 변경(현행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활용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사항을 정비(안 제5조, 안 제9조)
-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해 상위 법률에 맞게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28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퍼센트를”을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관람자에게”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를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무료”를 “할인 또는 무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제9조 관련)

1. 사용시간

구 분	시간(공연장)	비 고
오 전	09:00 ~ 12:00	※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철 야	22:00 ~ 다음날 07:00	
전시실	09:00 ~ 22:00	

2.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공연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	오전	100,000	150,000	무대 403㎡ (21m*14m)
	오후	140,000	190,000	
	야간	200,000	250,000	
소공연장 -277㎡ -196석	오전	30,000	5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전시실(525㎡)	1일	㎡당 200	※ 무빙월 120m / 벽체 90m	

※ 비고

- 1) 공연대관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2) 공연대관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 동안 2회 이상의 공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3)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 5)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은 매 3시간 단위로 야간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이나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행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 기본시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냉방비 및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연습실1	93.0	50,000	○ 1회 기준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연습실2	62.8	30,000	
연습실3	50.4	30,000	
연습실4	16.0	20,000	
스튜디오(대)	57.7	30,000	
스튜디오(소)	29.6	20,000	
문화교실1, 2	72.3	40,000	
문화교실3	91.5	50,000	
회의실	108.9	50,000	
공연장로비	400.0	50,000	
야외공연장	50.0	30,000	
분장실1(주연)	18.2	10,000	
분장실2(여)	38.8	20,000	
분장실3(남)	32.8	20,000	

다.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녹 음	방송, CF, 영화촬영	비 고
대공연장	150,000	1,000,000	방송, CF, 영화촬영 : 8시간 기준 녹음 : 1회 4시간기준

※ 녹음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하고, 철야작업시는 사용료의 150%로 하며, 녹음의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50%로 한다.

라.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기 본 사용료	비 고
시설명					
피아노	대공연장	고급	1일	6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무대	댄싱플로어(무용매트)		1일	100,000	
	사 막		1일	100,000	
	덧 마 루	기본50㎡	1일	50,000	
		추가	1㎡	2,000	
	음 향 반 사 판		1일	50,000	
음향	음향콘솔 CD Player 포함	대공연장	1일	70,000	
		소공연장	1일	50,000	
	메인스피커(1식) 앰프 포함	대공연장	1일	70,000	
		소공연장	1일	50,000	
	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 포함	대공연장	1일	20,000	
		소공연장	1일	20,000	
	유선마이크(다이나믹) 스탠드 포함	대공연장	1일	2,000	
		소공연장	1일	2,000	
	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	대공연장	1일	10,000	
		소공연장	1일	10,000	
	무선마이크 배터리, 스탠드포함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20,000	
조명	기 본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30,000	
	Follow spot		1회	30,000	
	Moving Light		1일/1대	30,000	
	Elipsoid Light		1일/1대	2,000	
	Strobe Light		1일/1대	3,000	
	Par 64		1일/1대	1,000	
	Par46(1세트 8대)		1일/1조	3,000	
	Bank(1세트 4구)		1일/1조	3,000	
	드라이아이스 기계		1일/1대	10,000	
	포그 기계(포그 기계액 포함)		1일/1대	30,000	
기타	의상 및 대·소도구		1일	취득가액의 5%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안」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규정을 이용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람료의 징수 등 개정(안 제15조제1항)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규정 개정(별표 1 제2호가목 비고 9))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29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시장”을 “전통어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시장”을 “전통어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어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남동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사용자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소래포구 어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에 따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 설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체계적인 어시장 운영에 필요한 심의·조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안 제4조의2
- 소래포구 어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에 따른 관련 준용규정 신설 : 안 제10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30호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 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31호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편의시설의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제4조(점검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8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제7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

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 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점검 업무를 법 제9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등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점검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점검 대상 및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점검요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점검시기 및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32호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이란 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사고·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이란 경찰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경험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지원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예방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33호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

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안 제2조, 제3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안 제6조)
-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7조)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등의 방법 (안 제8조)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9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규정(안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34호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제3조5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동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2조 6의5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 (안 제5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사업내용 (안 제6조)
-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안 제7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신청 절차 등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35호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민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상 운행 규정이 마련된 바,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이용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9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836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간

판”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 2항제3 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을 제작·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3만원	
- 0.5㎡ 이하		22만원	
- 0.5㎡ 초과 0.8㎡ 이하		32만원	
- 0.8㎡ 초과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42만원	
- 1.0㎡ 이상 1.3㎡ 이하		50만원	
- 1.3㎡ 초과 1.6㎡ 이하		64만원	
- 1.6㎡ 초과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75만원	
- 2.0㎡ 이상 2.3㎡ 이하		100만원	
- 2.3㎡ 초과 2.6㎡ 이하		129만원	
- 2.6㎡ 초과 3.0㎡ 미만		130만원+ 연면적 3㎡	
라) 연면적 3㎡ 이상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5㎡ 초과 0.8㎡ 이하		12만원	
- 0.8㎡ 초과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0㎡ 미만		33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49만원	
- 2.0㎡ 이상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58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67만원	
		79만원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8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2만원	
- 3.0㎡ 이상 3.7㎡ 이하 - 3.7㎡ 초과 4.4㎡ 이하 - 4.4㎡ 초과 5.0㎡ 미만		14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22만원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미만		25만원	
라) 면적 10㎡ 이상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우		장당 25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3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50천원		
- 21장 이상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 항 제1 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1일째부터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3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91일째부터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 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3.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와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관리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및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에 따른 과태료 조항 신설(제33조 별표 10)
- 현재 별개로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운영 사무를 구분하여 공공게시시설 관리 사무 정비(제21조)
- 행정대집행의 위탁 규정 삭제(제28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46호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1.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가. 공시대상: 공시대상: 2021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 나. 공시 기준일: 2021년 6월 1일
- 다. 개별주택수: 27호
- 라.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 마.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남동구청 세무과

2. 이의신청방법

- 가. 기간: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나. 신청인: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다. 방법: 남동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라. 처리: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과 통지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58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9.27. ~ 2021.10.12.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이륜차 5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1년 9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33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6.25. ○ 견인일 : 2021.8.1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1371-12 구월동 견인의뢰하기
	2021-0039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7.21. ○ 견인일 : 2021.8.26.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 6-23(석산로 208번길 57부근 간석초 모퉁이)
	2021-0040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7.21. ○ 견인일 : 2021.8.27.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역로 94 11단지
	2021-0044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7.27. ○ 견인일 : 2021.8.20.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1496-6
	2021-0045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7.29. ○ 견인일 : 2021.8.27.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249-2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1-0033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1371-12 구월동	2021.8.19.견인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1-0039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6-23(석산로 208번길 57부근 간석초 모퉁이)	2021.8.26.견인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1-0040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로 94 11단지	2021.8.27.견인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1-0044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1496-6	2021.8.20.견인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21-0045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249-2	2021.8.20.견인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59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9.27. ~ 2021.10.12.

3. 공고대상 : 16수2077 외 6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1-00367	16수2077	라세티 2.0 디젤	간석동 321-23 삼성빌라	윤영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246-11, 113동 1310호(무악동, 무악현대아파트)	2021.8.18.~2021.9.1 2021.9.7.~2021.9.23.	반송배달-기타 반송배달-기타	2021.8.12. 견인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1-00368	33무6644	SM7	남동구 청등대로 715번길 22, 논현주공14단지아파트 1411동과 1412동 사이 지상주차장	김민욱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79번길 9-16, 201호(장성동)	2021.8.18.~2021.9.1 2021.9.7.~2021.9.23.	반송배달-기타 반송배달-기타	2021.7.30. 견인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1-00369	47너5022	아반떼(AVANTE)	남동구 청등대로 715번길 22, 논현주공14단지아파트 제2지하주차장(1403동과 1404동 사이)	이춘하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 43-2, 502호(진평동, 대동카라)	2021.8.18.~2021.9.1 2021.9.7.~2021.9.23.	반송배달-기타 반송배달-기타	2021.8.4. 견인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1-00372	58주5886	싼타페(SANTAFE)	남동대로 898번길 49	김재덕	경기도 평택시 송월로15번길 16(신장동)	2021.8.18.~2021.9.1 2021.9.7.~2021.9.23.	대리수령	2021.8.2. 견인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21-00373	22소3966	쏘나타(SONATA)	구월동 1337	이현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12번길 9, 2층 202호(구월동, 그린빌)	2021.8.18.~2021.9.1 2021.9.7.~2021.9.23.	반송배달-기타 반송배달-기타	2021.8.2. 견인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6	2021-00374	08저4669	SM5	남동구 에코메트로12단지 B2F 지하주차장 1206동 앞 Y28	손영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 1206동 903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21.8.18.~2021.9.1 2021.9.7.~2021.9.23.	배우자 배달	2021.8.24. 견인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7	2021-00375	35더8711	A4 2.0 TFSI Quattro	남동구 경인로 626 리더스타워 A동 지하 2층	유성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35, A동 502호(간석동, 리더스타워)	2021.8.18.~2021.9.1 2021.9.7.~2021.9.23.	반송배달-기타 반송배달-기타	2021.8.23. 견인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74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래포구 어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어시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 소래포구 어시장 전통시장 인정에 따른 제명 개정
- 안 제5조부터 제8조(운영위원회)
 - :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 기능 등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생활경제과
☎ 453-5935, FAX 453-26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래포구 어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에 따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 협약서 제2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과 사용자 대표가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시장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의 장과 어시장 관리·운영 관계 부서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2. 사용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남동구의회 의원
4. 어시장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시장 담당 직원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4. 어시장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5.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 및 지도에 관한 자문 및 조정
6.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에 관한 사항
7. 시설 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8. 사용·수익허가 해지, 취소 또는 철회, 점포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시장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u> <u>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u>」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u>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u> <u>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u>」-----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u>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u>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u>소래포구 전통어시장</u>(이하 “어시장”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과 사용자 대표가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시장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의 장과 어시장 관리·운영 관계 부서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신 설>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2. 사용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남동구의회 의원

4. 어시장 운영에 대하여 풍부
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시장 담당 직원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
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
레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
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
다.

1.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신 설>

사항
2.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
한 사항
3.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4. 어시장 공용부분의 관리방법
에 관한 사항
5.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
및 지도에 관한 자문 및 조정
6.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
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에 관
한 사항
7. 시설 개선을 포함한 환경개
선에 관한 사항
8. 사용·수익허가 해지, 취소
또는 철회, 점포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시장 발전을 위하
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회
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
며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참고자료]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동일인의 위원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 협약서

제20조(어시장 운영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어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래포구 어시장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조합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조합 임원
2. 조합원 중 어시장 활성화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합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구의원
4. 관계공무원
5. 해당 분야 전문가
6. 편의시설 관리·운영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어시장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나. 제2조제4항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영업형태 또는 업종 변경

2. 자문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시장 관리운영

나. 공용부분의 관리방법

다.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사용자 주의·지도

라.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의견 취합 및 협의

마.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

바. 사용수익허가 해지 또는 취소, 철회 점포의 용도변경

사. 그 밖에 어시장 발전을 위하여 구청 또는 조합이 요청하는 사항 등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82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주민 의견청취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뉴서울종합상가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목적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에 대한 주민, 광고주, 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라.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의견청취(공고)기간 : 2021. 9. 28. ~ 2021. 10. 13. (15일간)

4.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청취(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내용

- 뉴서울종합상가 간판개선사업(첨부 구간도 참조)에 대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일체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 2021. 10. 13.한 (우편발송인 경우, 우편물 소인 날짜 기준)

다. 제 출 처

- 직접방문 : 남동구청 도시경관과(광고물관리팀)
- 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 팩스(FAX) 전송 : 032-453-2839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경관과(광고물관리팀 ☎453-228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기한 내 제출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1 - 호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 .

남동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정비시범구역은 「뉴서울종합상가 간판개선사업」의 대상인 뉴서울종합상가(담방로 21번길 55)로 지정한다.

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하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 간판, 연립형 간판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 또는 시트지 등 유리창에서 돌출되지 아니하게 부착하는 창문이용 광고물과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상단이나 주출입구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벽면을 이용한 연립형 간판 등은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③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싸인볼,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을 추가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⑤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이용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업소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에는 도로변을 향한 업소의 상단 벽면에 각각 표시할 수 있다.

② 건물정면 1층에는 벽면이용 간판을 복합형(판류+입체형), 입체형(글자형을 직접 벽면이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2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가로 크기는 15m 이내로 해당 업소의 상단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문자와 도형의 세로크기는 건물층수에 따라 1층은 50c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2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50\text{cm} + (\text{해당층수} - 1) \times 5\text{cm}$ 이내

④ 건물의 상단 벽면에는 건물명 또는 가로간판을 표시하지 아니한 업소명을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건물의 지하층 업소의 경우 출입구 상단 벽면에 세로크기 50cm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특정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협의체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적용의 특례)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이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 ③ **(기타사항)**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옥외광고물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정비시범지역 위치도



□ 현장사진



뉴서울종합상가 일대(담방로21번길 55)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83호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은 주민·기업·남동구가 협의하여 작성된 행동 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주요 목적임
-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협의회 명칭을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의제21의 주요 추진목적인 지속가능발전을 협의회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제명을 변경함
 - 제명 변경(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항 및 용어 정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환경보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6층 환경보전과

☎ 453-2607, FAX 453-260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1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은 주민·기업·남동구가 협의하여 작성된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주요목적임
-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협의회 명칭을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변경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항 및 용어 정비(제3조 등)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속가능발전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하여 수립된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을 실천하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한 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력하여야 하며,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해 노력”을 “협력”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종합계획수립, 추진”을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를 각각 “지속가능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을 각각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동의장단”을 “공동회장단”으로, “공동의장을”을 “공동회장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의장”을 각각 “공동회장”으로, 같은 항 중 “상임의장을”을 “상임회장을”로, “상임의장은”을 “상임회장은”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의장”을 “상임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제1항 중 “공동의장단”을 “공동회장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상임의장”을 각각 “상임회장”으로, 같은 항 중 “맑은터전 남동의제21 실천”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공동의장”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호 중 “남동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상임의장”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상임의장”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를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상임의장”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u>	<u>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효율적으로 추진하기</u> --- ----- ---- <u>지속가능발전협의회</u> ----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맑은터전 남동의제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남동구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하“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모든 개발은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며 다음세대와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의”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협력-----.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종합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2.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4. (생략)
5. 맑은터전 남동의제21과 관련 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6. 그 밖에 맑은터전 남동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 기업 및 구가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의장단 : 주민·기업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의장을 두며, 주민대표와 기업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생략)
3. 위촉직위원 : 120명 이내로

제5조(기능) -----
-----.

1.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추진 -----
2. 지속가능발전 -----

3. 지속가능발전 -----

4. (현행과 같음)
5. 지속가능발전-----

6. ----- 지속가능발전-----

제6조(구성) ① -----

--.

1. 공동회장단 -----

-- 공동회장을 -----

--.
2. (현행과 같음)
3.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주민·기업을 대표할 수 있고, 맑은터전 남동의제21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사람으로서 공동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협의회는 2명의 공동의장 중에서 선출한 1명의 상임의장을 두어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 상임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생략)

제7조(임기)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해촉) 상임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맑은터전 남동의제21”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거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3. (생략)

제9조(총회) ① 총회는 공동의장

지속가능발전-----

----- 공
동회장-----

② ----- 공동회장 ---
----- 상임회장을

----- 상임회장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기) 회장 -----

-----.

제8조(해촉) 상임회장-----

-----.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9조(총회) ① ----- 공동회장

단을 비롯하여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에서는 상임의장 및 주민대표·기업대표 선출과 맑은터전 남동의제21 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보고·승인·의결하며,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생략)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맑은터전 남동의제21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단-----
-----.

② -----

상임회장-----

-----.

③ ----- 상임회장 -----
----- 지속
가능발전-----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속가능
발전 -----

----- 공동회장-----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략)

6. 남동의제21 실천의 종합평가
에 관한 사항

7.·8. (생략)

제12조(분과위원회) ①·② (생략)

③ 분과위원회는 맑은터전 남동
의제21 실천운동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
구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④ (생략)

제13조(사무국) ①·② (생략)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④ (생략)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상임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한 사항 중 유관기관의 장이 처
리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를 요청할 수 있
다.

②·③ (생략)

제19조(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지
원) 구청장은 협의회의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1. ~ 5. (현행과 같음)

6. 지속가능발전 -----

7.·8. (현행과 같음)

제12조(분과위원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지속가능발전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상임회장-----.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상임
회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지
원) -----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3. (생 략)

제20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생 략)

②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 -----

2. 3.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회장-----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84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2차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신규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2차 설치
2. 시 행 청 : 남동구청
3. 설치장소

연 번	보호구역명	위 치	설치대수
1	성리초등학교	구월동 1489-6	1
2	만수초등학교	만수동 1001	1
3	인수초등학교	만수동 391	1
4	미추홀학교	만수동 2-102	1
5	장도초등학교	논현동 685	1

4. 예고기간 : 2021. 9. 29.(수) ~ 2021. 10. 20.(수) (공고일로부터 22일)
5. 의견제출 장소 :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6. 문의사항 :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032-453-2897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2차 설치			
2. 당사자	성명(명칭)		연락처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연락처 :)

남동구청장 귀 하

붙임

CCTV설치 위치도

1. 성리초등학교 (구월동 1489-6)

위치도



현장사진



붙임

CCTV설치 위치도

2. 만수초등학교 (만수동 1001)

위치도



현장사진



붙임

CCTV설치 위치도

3. 인수초등학교 (만수동 391)

위치도



현장사진



붙임

CCTV설치 위치도

4. 미추홀학교 (만수동 2-102)



현장사진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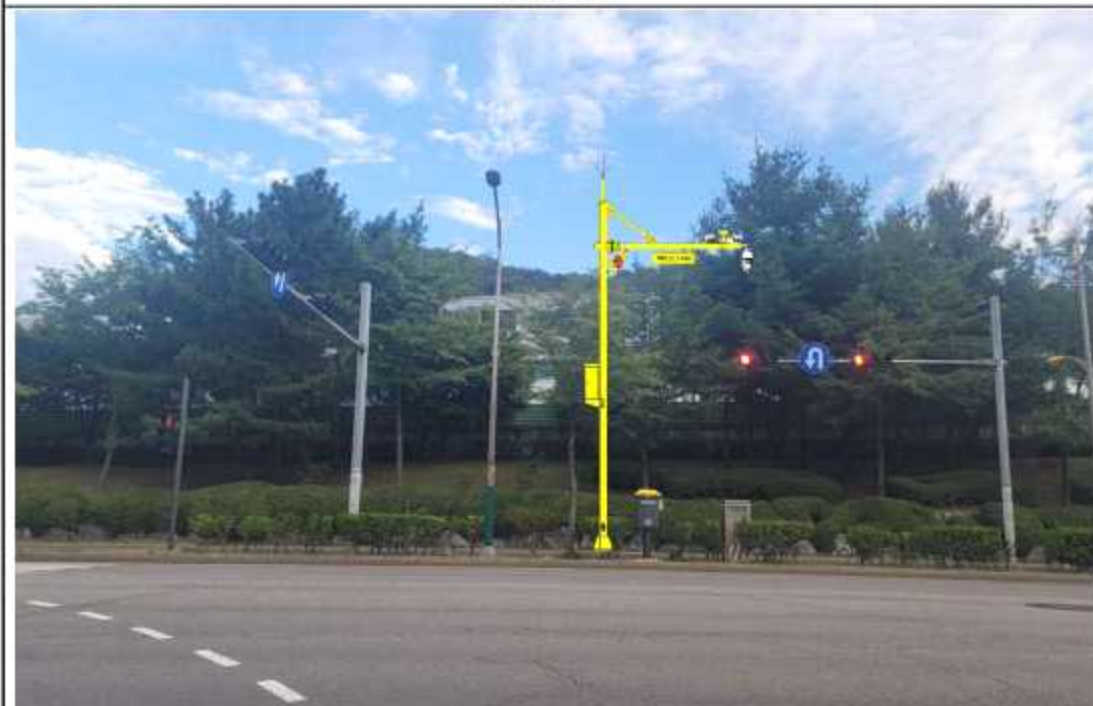
CCTV설치 위치도

5. 장도초등학교 (논현동 685)

위치도



현장사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14.(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이*만	인천82바**9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5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최*원	인천83바**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8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환	인천84바**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최*식	인천81아**48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열	인천86바**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강*기	인천99바**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78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한*로	인천84바**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한*로	인천84바**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주식회사 더**	인천83사**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88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보조금 재지원 불가 항목 정비하여 노후 공동주택 개선 확대
- 경비실 환경 개선 장려 규정 마련
- 각 분야의 다양한 위원 구성을 통하여 공정한 심의 진행
- 공동주택 분쟁시 자문단 활용 근거 규정 마련
- 보조금 사업시 적용되는 서면 평가 심사표 정비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받은 후 5년 기간 동안 보조금 재지원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종의 사업만 지원 불가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의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정비(제4조제6항)
- 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에 경비실 환경 개선 추가(제4조제7항)
- 위원회 구성시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남동구의 회 구의원 포함,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제1

2조)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분야 및 자문단 위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분쟁 등의 자문단 활용 근거 마련(별표3)
- 보조금 지원 사업 평가시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한 공동주택에는 가점 부여, 부실 관리 단지의 경우 감점 부여 기준 세분화(별표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792, FAX 453-27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1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보조금 재지원 불가 항목 정비하여 노후 공동주택 개선 확대
- 경비실 환경 개선 장려 규정 마련
- 각 분야의 다양한 위원 구성을 통하여 공정한 심의 진행
- 공동주택 분쟁시 자문단 활용 근거 규정 마련
- 보조금 사업시 적용되는 서면 평가 심사표 정비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받은 후 5년 기간 동안 보조금 재지원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종의 사업만 지원 불가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의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정비(제4조제6항)
- 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에 경비실 환경 개선 추가(제4조제7항)
- 위원회 구성시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남동구의회 구의원 포함,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제12조)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분야 및 자문단 위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분쟁 등의 자문단 활용 근거 마련(별표3)
- 보조금 지원 사업 평가시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실한 공동주택에는 가점 부여, 부실 관리 단지의 경우 감점 부여 기준 세분화(별표4)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공동주택 시설에 대하여는” 을 “공동주택은 동종의 사업에 대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비실 환경개선사업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동구의회 구의원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분야 및 자문단 위촉기준 등

(제7조의2 관련)

1. 자문분야

분 야	자문내용
공사 및 용역	① 공사(시공) 및 계약 ② 관리용역 ③ 건축물 안전관리
공동체활성화	① 관리조직 구성 ② 공동체 활동
관리비	① 관리비 부과 및 사용 ②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공동주택분쟁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②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및 주택위탁관리업자) ③ 층간소음

2. 자문위원 위촉기준

- 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
- 나. 건축사, 기술사, 구조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 다.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라. 관련 분야 10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 마. 기타 그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3. 자 문 료

- 가. 자문(컨설팅) 및 관련 정보 제공, 자문결과보고서 제공은 무료
- 나. 자문(컨설팅)에 필요한 장비임차, 실험 등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부담

[별표 4]

공동주택 보조금 서면평가 심사표(제8조 제1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특점
정량 평가 (부서 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30년 이상 ■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미만 ■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 준공 후 10년 미만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150세대 미만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5)	■ 30년 이상 ■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2 9 6 3	
	보조금 지원 횟수(15)	■ 최초 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지원 ■ 4회 이상 지원	15 12 9 6 3	
	관리 투명성(5)	■ 보조금 신청공사의 당해년 장기수선계획 반영 ■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2 2 1	
	시책이행(5)	■ 인천시 관리규약준칙 준수(개정실태) ■ 입주자대표회의 방송장비 운영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2 2 1	
정성 평가 (심사 위원) 30점	긴급성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⑧ 가점 (5)	■ 우수(모범)단지 선정		+2점	+5이 내
	■ 자치기구(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층간 소음위원회) 전부 구성		+1점	
	■ 전년도 공동체활성화사업 참여실적		+1점	
	■ 전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소방교육 전원 이수		+1점	
⑨ 감점 (-5)	■ 시 또는 구 관리실태 감사 행정처분(과태료)		-1점	-5이 내
	■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		-1점	
	■ 관리규약 미 개정단지		-1점	
	■ 전년도 정기안전점검 FMS미입력단지		-1점	
	■ 전년도 k-apt 관리비 미공개단지		-1점	

※ 가점의 경우 동일 사항에 대하여 중복 인정 불가.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가 동일점수일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지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⑤ (생략)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u>공동주택</u> <u>시설에 대하여는</u> 별표 2의 지원 한도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다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⑥ ----- <u>공동주택은</u> <u>동종의 사업에 대하여</u> ----- ----- -----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 700만원 범위 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 원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⑦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u>경비실 환경개선사업</u>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 고, 부위원장은 <u>공동주택 업무</u> <u>담당국장으로 한다.</u>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 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공 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③ 위원은 다음 <u>각 호</u> 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③ ----- <u>각 호의 어느 하</u> <u>나</u> -----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남동구의회 구의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90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9.29. ~ 2021.10.14.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73구3083 외 6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1년 9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1-00250	73구3083	그랜드카니발	(주)에이엠텍 12011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27번길 125	㈜인천폐차사 업소/ 2021.6.17.	남동구(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 광명시 지도민원과 김포시(징수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계양구(교통민원과) 서구(검단출장소, 주차관리과) 부평구(주차지도과) 인천 중구(교통운수과)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인천지방방법원 부천지원 천안시 서북구(산업교통과) 시흥시(교통정책과)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연수구(차량민원과) 한국도로공사 김포경찰서 부천시(주차지도과)
2021-00279	49조6261	K5	정상호 9302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108동 1803호(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인천폐차사 업소/ 2021.7.1.	부평구(주차지도과) 부천시(대중교통과, 주차지도과) 구미시(교통) 인천논현경찰서 마포구(교통지도과) 한국도로공사 남동구(자동차관리과)
2021-00284	92저5385	봉고III 1톤	폐기물공동수거 운영기구 주식회사 12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121(고잔동)	㈜인천폐차사 업소/ 2021.7.2.	㈜하나캐피탈 남동구(환경보전과, 자동차관리과, 세입징수과) 인천논현경찰서
2021-00293	01로6942	에쿠스(EQUUS)	케이투익스프레 스(주) 1101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67(공항동)	㈜인천폐차사 업소/ 2021.6.30.	강서구(징수과, 교통행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2021-00294	18버4829	다이하츠미 라코코아	문승일 780116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244번길 16, 3층 302호(도원동, 도원빌라)	㈜인천폐차사 업소/ 2021.7.1.	㈜현대캐피탈 남동구(자동차관리과,세입징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인천지방법원 서구(주차관리과) 인천광역시(납세협력담당관)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1-00299	04루6423	모닝	주인식 8905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68-7(한남동)	㈜인천폐차사 업소/ 2021.7.2.	동양생명보험(주) 화성서부경찰서 서대문구(교통관리과) 종로구(주차관리과) 관악구(교통지도과) 서울 중구(교통지도과) 용산구(교통지도과,세무2과) 계양구(교통민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관악구(세무1과) 송파구(세무2과) 남구(세무2과) 남동구(교통행정과) 강남구(청소행정과)
2021-00300	64오5087	비스토	(주) 누리통상 120111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1번길 24,2층 203호(항동1가)	㈜인천폐차사 업소/ 2021.7.2.	인천 중구(교통행정과,세무과,교통운수과) 인천중부경찰서 고양시 덕양구(교통행정과) 강남구(주차관리과) 연수구(차량민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자격징수부) 남동구(교통행정과) 부천시(주차지도과)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사 업자)	주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1-00250	73구3083	그랜드카니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2-1 이화아파트 옆	(주)에** 텍	12****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로12*번길 1**	2021.6.17.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2	2021-00279	49조6261	K5	남동구 간석동 581-8	정*호	9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로 10*0, 10*동 1*03호(만수동, ****아파트)	2021.7.1.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3	2021-00284	92저5385	봉고Ⅲ 1톤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유승테라폴리스 지하2층 주차장	폐**** ***** 주식회 사	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6*7번길 **1 (고잔동)	2021.7.2.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4	2021-00293	01로6942	에쿠스(EQUUS)	남동구 남동서로 291	케**** **스(주)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 *7 (공항동)	2021.6.30.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5	2021-00294	18버4829	다이하츠미라코코아	남동구 호구포로 803, 2300단지 B2 가-12 주차구역	문*일	78****	인천광역시 중구 **선로2**번길 1*, *층 **2호(도원동, 도원빌라)	2021.7.1.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6	2021-00299	04루6423	모닝	서창NH12단지 내 주차장 제1지하주차장 1204동 12번기둥	주*식	89****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5*길 *8-*(한남동)	2021.7.2.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7	2021-00300	64오5087	비스토	서창NH12단지 내 주차장 제2지하주차장 1212동 12번기둥	(주) 누**상	12****	인천광역시 중구 ***로2**번길 2*, *층 20*호(항동1가)	2021.7.2.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9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 10. 12.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 9. 24. ~ 2021. 10. 8.(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6 -0199663	필미앤필미(FI LLME & FEELME)	강*진	논고개로136번길 6-6, 1층 일부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 4. 1.	2021. 10. 12.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1. 10. 8.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1년 9월 24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래구역 소로2-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래구역 소로2-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2,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9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소래구역 소로2-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102m, B=8m, A=887.0㎡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 성명: 남동구청장(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 기정: 2020.05.28. ~ 2021.12.31.
- ☐ 변경: 2020.05.28. ~ 2025.05.2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 따로 붙임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6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54번길 29-1 (도림동)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20번길 124 (고잔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6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54번길 29-1 (도림동)	2009.11.16.	예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9.28.	건물 등의 주된 수골로54번길 29-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4-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38번길 15 (고잔동)	2009.11.16.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9.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동로138번길 1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6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24 (간석동)	2009.11.16.	고잔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1.9.28.	건물 등의 주된 예술로346번길 2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4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6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20 (간석동)	2009.11.16.	간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1.9.28.	건물 등의 주된 예술로346번길 2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5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40 (운연동)	2009.11.16.	인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9.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음실서로 4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0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25번길 35 (남촌동)	2009.11.16.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21.9.28.	건물 등의 주된 남동대로425번길 3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5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20번길 124 (고잔동)	2021.9.2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49번길 18 (간석동)	2021.9.2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